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폭력의 범위에 국가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피해 추가 >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017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가폭력의 정의에 국가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피해 추가 ...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진숙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2. 10.
3. 회 부 일 : 2025. 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폭력을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나, 사회재난 등에 있어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는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폭력의 정의에 국가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로까지 확대하여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자들도 적절한 치유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80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국가폭력의 범위에 국가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피해 추가 (안 제2조제1호)

개정안은 국가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피해를 국가폭력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폭력”이란 1945년 8월 15일 이후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u>행사</u> 에 의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행위로서 민간인 집단희생, 사망·고문·상해·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테러·폭력·학살, 군 의문사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1)에 따른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2.·3. (생략)	제2조(정의) ----- -----. 1. ----- ----- <u>행사</u> <u>또는 불행사에</u> ----- ----- ----- ----- ----- ----- ----- ----- ----- ----- 2.·3.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

현행법은 국가폭력을 1945년 8월 15일 이후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행위로서 민간인 집단희생, 사망·고문·상해·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테러·폭력·학살, 군 의문사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폭력의 범위에 사회재난 등에 있어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는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피해를 국가폭력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치유 범위가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 외에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사회재난 등까지 확대되어 사회재난의 피해자 및 그 유족의 트라우마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3.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4.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첫째, 사회재난 등에 있어 국가 부작위에 의한 피해를 치유하는 것이 동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임.

동법은 1945년 8월 15일 이후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조작의혹 등과 관련된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제정된 것임을 감안할 때,²⁾

개정안에 따라 사회재난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치유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인권 회복을 추구하는 동법의 입법 목적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임.

다만, 사회재난에 따른 트라우마 치유와 관련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설치되어 사회재난의 피해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심리 치유를 지원하고 있고, 특히 안산 마음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포항트라우마센터는 각각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 예정 중에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2)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하여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개요〉

□ 국가 트라우마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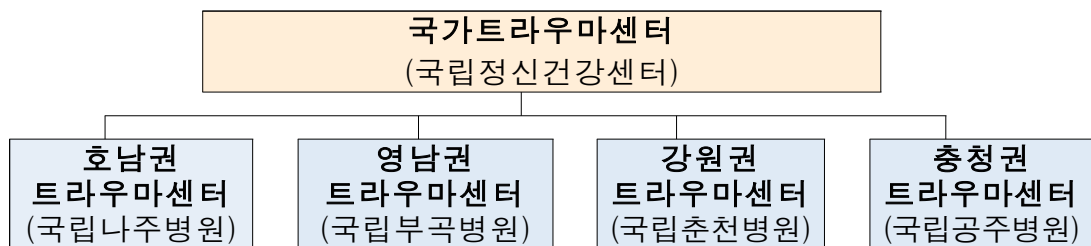
- (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2 및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국가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18.4월~)
- (역할) 재난 피해자 및 가족, 대응인력 대상 심리지원 실시, 심리지원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트라우마 관련 조사 및 연구 등
- (현황) 5개 팀(기획관리팀, 트라우마연구팀, 위기대응팀, 회복지원팀, 인력개발팀) 38명 운영 중

□ 권역 트라우마센터

- (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2 및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4개 국립정신병원(나주·춘천·부곡·공주병원)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19년~)

* ('19.5.) 영남권 개소 → ('21.6.) 호남권, 강원권, 충청권 개소

< 참고 : 국가 및 권역 트라우마센터 체계도 >



※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포항 지진 피해 시민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재난치유복합센터를 건립 중이며, '25년 개소 예정
(안산 마음건강센터) 세월호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종합적 건강 관리 및 재난 시 수도권 심리지원을 위해 '25년 개소 예정

- (역할) 권역별 재난 심리지원 실시, 해당 권역 내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국가 트라우마센터 업무 지원 등

< 참고 :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인력 현황 >

(단위 : 명)

구분 \ 권역		국가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충청권
인력 (현원/정원)	합계	33/49	11 / 11	9 / 9	10 / 9	8 / 10
	공무원	16/16	3 / 3	3 / 3	5 / 3	3 / 3
	공무원 외	17/33	8 / 8	6 / 6	5 / 6	5 / 7

※ '25년 정원 및 현원(1월 말) 기준

※ 자료: 보건복지부

둘째, 개정안에 따른 공권력 불행사의 기준이 다소 모호할 수 있다는 점임.

불법적 공권력 행사에 의한 피해는 과거사 규명 등을 통해 피해 여부 등을 밝힐 수 있으나,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해서는 판단 기준이 공권력 행사에 비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화를 고려할 경우 공권력 불행사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국가 부작위에 따른 사회재난을 치유센터의 치유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인권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에 불부합하여 현행법에 공권력 불행사와 관련된 사회재난을 포함하는 것은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또한, 사회재난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가 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 피해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심리 치유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그간 축적된 심리 상담 노하우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속적으로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아울러 불법적 공권력 불행사는 불법적 공권력 행사에 의한 피해에 비해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논의 선행이 필수적으로 보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